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2)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주계약이 해지(解止),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1)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고 2종의 경우는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2)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로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별표1 "특정부위 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2.별표2 "특정질병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3)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7)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계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특정부위의 분류번호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1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7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10	귀(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또는 유양돌기 포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안검, 결막, 누기,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유선 포함)
16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분류번호	특정부위의 명칭
19	갑상선
20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1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22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23	선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28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식도
35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36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37	수골(手骨)
38	족골(足骨)
39	상·하악골(上·下顎骨)

(별표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호,1995.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병 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심장질환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뇌혈관질환	I60~I69	
당뇨병	E10~E14	
고혈압	I10~I14	
결 핵	A15~A19, B90	
담석증	K 80	담석증
요로결석증	N 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 21	하부 요로의 결석
	N 23	상세불명의 신성 산통
임신중독증	O 11	부가된 단백뇨를 동반한 선재성 고혈압
	O 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 부종 및 단백뇨
	O 13	의미있는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 고혈압
	O 14	의미 있는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O 15	자간증
골관절증 및 류마토이드 관절염	M 0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토이드 관절염
	M 06	기타 류마토이드 관절염
	M 08	연소자성 관절염
	M 15	다발성 관절증
	M 16	고관절증
	M 17	무릎관절증
	M 18	제 1수근중수 관절의 관절증
	M 19	기타 관절증
척추만곡증	M 40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M 41	척추측만증

※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지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 외 사 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